

## 미국 지식재산소송의 동향

- Skidmore v. Led Zeppelin 제9연방항소법원 판결
- Georgia v. Public.Resource.Org 연방대법원 판결
- Estate of Smith v. Graham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박운정 선임연구원

### 00 개요

#### [음악저작물의 침해]

- ▶ Skidmore v. Led Zeppelin, 952 F.3d 1051 (9th Cir. 2020): 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은 Spirit의 ‘Taurus’를 침해하지 않음

오랫동안 음반계의 이목을 끌어왔던 레드 제플린의 저작권 침해소송이 막을 내렸다. 대체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낳고 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저작물의 유사성 판단기준, 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등에 대하여 검토 후 ‘Stairway to Heaven’이 ‘Tauru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두 곡을 배심원단 앞에서 재생하고자 한 Skidmore측의 신청은 거절되었는데, Taurus의 저작권이 약보에 국한되기 때문이었다.

#### [법령 주석과 공공저작물]

- ▶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140 S.Ct. 1498 (2020): 주 정부가 제공하는 법령의 주석은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연방대법원은 조지아 주 정부가 유상으로 제공해오던 법조문의 주석 부분을 복제한 Public.Resource.org에 대하여 제기한 저작권 침해의 소에서 5:4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주었다. 다수의견은 위 주석은 비록 그 자체로 법조문과 같은 효력은 없을지라도 결국 입법자가 입법의무수행의 일환으로 창작하여 실질적으로 법의 해석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 [공정이용]

- ▶ Estate of Smith v. Graham, 799 Fed. Appx. 36 (2d Cir. 2020): 원곡과 정반대의 메시지 전달을 위해 원곡을 사용한 것은 변형적 목적이자 공정이용에 해당함

원곡에는 재즈음악이 다른 음악에 비해 우수하고 결국은 재즈만이 남을 것이라는 가사가 있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와 정반대의 메시지, 즉 음악에 더 우월한 장르는 없고 모든 진정한 음악은 가치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원곡을 어느 정도 사용한 것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01 [음악저작물의 침해]

### ▶ Skidmore v. Led Zeppelin, 952 F.3d 1051 (9th Cir. 2020): 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은 Spirit의 ‘Taurus’를 침해하지 않음

제9연방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의한 재심 판결로 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이 Spirit의 ‘Taurus’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침해를 인정한 기존의 3인 합의부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1심 재판에서 Skidmore측은 Led Zeppelin 멤버이자 Stairway의 작곡자인 Jimmy Page 앞에서 위 두 곡을 재생하고, 그의 반응을 배심원단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로써 Led Zeppelin 멤버들이 공연이나 녹음을 통해서 Taurus에 접근(access)할 수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지방법원은 Taurus의 저작권은 악보에 국한될 뿐 녹음물에까지 미치지 않는데, 곡을 재생하게 되면 배심원단이 이를 근거로 녹음물 간의 상당한 유사성 판단을 하게 될 위험이 너무 크므로 Skidmore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와 무관하게 Page는 당시 Taurus 앨범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데(실제로 두 밴드는 함께 순회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배심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저작물 간 객관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배심원 설명서(jury instruction)에 반음계 하행 스케일 등 음악적 공통분모에 불과한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선택하고 배열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선택과 배열(selection and arrangement)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점 등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는데, 이후 전원합의체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원합의부는 3인 합의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침해 여부는 양 저작물 간에 상당한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객관적 유사성(구체적 표현)과 주관적 유사성(통상의 합리적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 유사 여부)을 살펴보아 결정한다. 유사성 판단에 있어, 해당 분야의 창작에서 공통분모와 같은 요소들 또는 창작의 도구(building blocks)들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들을 단순히 일부 선택하여 배열하였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도 없고, Skidmore는 배심원 설명서에 선택과 배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설령 이러한 누락이 잘못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해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Taurus’는 현 연방저작권법(1976)이 적용되기 전에 출시된 곡이어서 구 연방저작권법(1909)의 적용을 받고, 구법은 녹음물(sound recordings)을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Taurus의 저작권의 범위는 악보에 제한된다고 하였다. 또한 위 두 곡에서 공통되는 반음계 하행 스케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고, 따라서 아예 상당한 유사성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의 선례에서 적용되어 왔던 역비례원칙(inverse ratio rule)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성립한다는 것으로, Skidmore측은 이를 근거로 Led Zeppelin은 Taurus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유사성이 쉽게 인정된다고 주장한 것인데, 전원합의부는 역비례원칙은 다른 연방항소법원의 법리와 충돌하고, 법원과 당사자들에게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고 보아 이 판결을 통해 역비례원칙을 폐기하였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른 저작권 침해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캘리포니아중부연방지방법원은 위 판결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법리를 인용하면서 Katy Perry의 ‘Dark Horse’가 Marcus “Flame” Gray의 ‘Joyful Noise’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Ed Sheeran의 'Thinking Out Loud'에 대한 침해사건에서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Marvin Gaye의 'Let's Get It On'은 구 연방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그 악보만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재판에서 위 곡의 연주를 허용할 것인지에 등에 대하여 Led Zeppelin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난다.

#저작권 침해 #상당한 유사성 #선택과 배열 #역비례원칙 #Led Zeppelin #Stairway to Heaven

## 02 [법령 주석과 공공저작물]

### ▶ Georgia v. Public.Resource.Org, Inc., 140 S.Ct. 1498 (2020): 주 정부가 제공하는 법령의 주석은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법조문 자체는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법조문에 대하여 주정부가 제공하는 주석(annotation)까지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조지아주는 주법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대한 주석은 유료로 제공하여 왔고, 이러한 주석을 무단으로 복제 및 재발행한 Public.Resource.Org(PRO)에 대하여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조지아북부연방지방법원은 위 주석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따라서 PRO는 조지아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제11연방항소법원은 주석 또한 '정부칙령원칙(government edicts doctrine. 법률적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권한을 지닌 공직자는 그 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생산한 창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에 따라 공공저작물에 속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문제가 되는 주석은 조지아주법령(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 OCGA)의 각 조문 하단에 기재된 것으로, 조문마다 관련 판례의 요지나 관련 논문의 목록 등을 소개하였다(우리나라로 치면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하단의 관련 판례 및 문헌 목록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지아주 입법부 산하 법개정위원회(Code Revision Commission)로부터 위탁을 받아 LexisNexis Group의 Matthew Bender & Co.에서 업무상 저작물로 작성한 것이다.

다수의견(Roberts, Sotomayor, Kagan, Gorsuch, Kavanaugh 대법관)은 법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천명하며, 정부칙령원칙의 적용은 '법률적 권위를 가지고 발언할 권한을 지닌 공직자'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주석이 법령으로서의 권위를 갖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다만 (1) 그 작성자가 법관이나 입법가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2) 그 사법적 또는 입법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하여야 하고,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관이 그 사법적 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판결문의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자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위 주석은 Matthew Bender & Co.에서 업무상 저작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법개정위원회가 유일한 저작권자가 되고, 주석에 법조문과 동일한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입법자에 의하여 작성된 권위 있는 자료이므로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Ginsburg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하여 입법가의 역할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석은 입법적 의무수행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Thomas 대법관 등은 다른 반대의견에서 많은 주에서 법령 주석이 실제로는 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작성되는 점을 바탕으로 다수의견이 가져올 실무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주 정부가 작성한 것이라도 관광청의 홍보자료 등 입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 대상은 얼마든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Matthew Bender & Co.가 주 정부와 계약 하에 업무상

저작물로 위 주석을 작성한 것이지만, 사기업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온라인 주해 등 이러한 위임관계가 없이 작성된 내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분야에서는 이 판결로 인해 조지아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주 정부와 LexisNexis 등의 기업 간 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공공저작물 #법령 #주석 #정부직원원칙

## 03 [공정이용]

### ▶ Estate of Smith v. Graham, 799 Fed. Appx. 36 (2d Cir. 2020): 원곡과 정반대의 메시지 전달을 위해 원곡을 사용한 것은 변형적 목적이자 공정이용에 해당함

저작물의 사용에 공정이용의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연방저작권법 17 U.S.C. 제107조의 4가지 요소, 즉 (1)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성(상업적 사용인지 교육 목적인지 등),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 대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량과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state of Smith는 래퍼 Drake가 'Pound Cake'에 Jimmy Smith의 'Jimmy Smith Rap'을 35초 가량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Jimmy Smith Rap'을 'Pound Cake'에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제2연방항소법원도 이에 동의하였다. 제1요소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Jimmy Smith Rap'은 재즈음악이 다른 장르의 음악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Pound Cake'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의 성격이 이용대상 저작물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그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고 하였고, 제2요소는 그 비중이 낮은 데다가 특히 변형적 사용의 경우 공정이용에 무게를 실어주는 편이라고 보았다. 제3요소에 대하여는 2차적 사용에 그 변형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용은 허용되고, 이 사건에서는 'Jimmy Smith Rap'은 이 곡이 수록된 'Off the Top' 앨범의 제작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Pound Cake'에서 이를 사용한 것은 음악의 특징은 제작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합리적인 정도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요소는 힙합음악인 'Pound Cake'으로 인하여 재즈뮤지션이 재즈앨범에 수록한 'Jimmy Smith Rap'이 시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변형적 목적